

의안번호	2113942
의 퇴 인	고민정의원
회 답 일	2021. 11.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시·도아동권리보장원(안 제10조의3 신설)

- 시·도지사는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 간 총 926억 1,400만원, 연평균 185억 2,300만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안 제10조의3 신설)	18,968	18,198	18,354	18,497	18,597	92,614	18,523
－ 국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 지방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주: 국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4
2. 시·도아동권리보장원(안 제10조의3)	5
3. 추계 결과	7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89억 6,800만원, 2026년 185억 9,7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6억 1,400만원(연평균 185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안 제10조의3 신설)	18,968	18,198	18,354	18,497	18,597	92,614	18,523
－ 국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 지방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주: 국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시·도아동권리보장원(안 제10조의3 신설)
 - 시·도지사는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시·도보장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보장원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

1)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²⁾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보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를 추계의 대상으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시아동복지센터³⁾와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⁴⁾의 2021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평균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함
 - －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또는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개정안에서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아동보호사업, 가정위탁 및 입양 관련 사업, 아동양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따라서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의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로 적용하는 두 기관의 아동 1인당 평균 예산 규모에 시·도별 아동 수를 적용하여 추계 ([표 2] 참조)
 - 자산취득비는 설치 첫 해인 2022년에만 발생하며, 「범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에서 산정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 4,196,924원(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2)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3)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1963년에 설립되어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운영하는 기관으로, 2001년에 소관사무를 변경하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기관 산하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4)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는 1968년에 설립되어 부산시에서 직접 지원·운영하는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임

-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치에 따른 임차료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 유사사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이용하여 별도의 임차료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함
- 국고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가정함

[표 2] 지역별 아동 분포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

지역	아동 수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	1,196,733	15.7
부산광역시	434,918	5.7
대구광역시	349,459	4.6
인천광역시	442,840	5.8
광주광역시	240,342	3.2
대전광역시	227,048	3.0
울산광역시	186,566	2.4
세종특별자치시	81,031	1.1
경기도	2,168,098	28.4
강원도	208,824	2.7
충청북도	239,077	3.1
충청남도	334,071	4.4
전라북도	261,158	3.4
전라남도	257,161	3.4
경상북도	363,621	4.8
경상남도	520,721	6.8
제주특별자치도	116,216	1.5
전국	7,627,884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설치지역의 아동 수”에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를 곱하고, 이에 자산취득비를 더하여 산출
- “설치지역의 아동 수”는 기설치된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아동 수로,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시나리오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는 기설치된 서울시아동복지센터와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2021년 예산 기준 평균 지원단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아동 수로 나누어 산출
 - 시·도별 자산취득비는 시·도별 아동 수를 고려한 인력 규모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 4,196,924원(2020년 기준) 적용
 - 추계기간 중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운영비와 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text{연간 추가재정소요}_t &= 15\text{개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_t \\ &= \text{설치지역 아동 수}_{it}^{1)} \times \text{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_t^{2)} \\ &\quad + \text{시·도별 자산취득비}_i^{3)}\end{aligned}$$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2~2026년), i 는 15개 설치대상 시·도
국고보조율은 50%로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 1) 설치지역 아동 수 $_{it}$ 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아동 수로,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시나리오 기준)의 시·도별 아동 수를 준용하여 산출
 - 2)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 $_t = [\{\text{유사사례}^a) \text{ 평균 인건비}_{t-1} \times (1+\alpha^b)\} + \{\text{유사사례 평균 운영비}_{t-1} \times (1+\beta^c)\} + \{\text{유사사례 평균 사업비}_{t-1} \times (1+\beta^c)\}] / \text{서울시 및 부산시의 아동 수}(2021\text{년 기준})$
 - a) 유사사례는 서울시와 부산시로서, 2021년 예산 기준 평균 지원단가를 산출
 - b) α 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 c) β 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

3) 자산취득비_{t=2022} = 인원_{t=2022}^{d)} × 1인당 자산취득비_{t=2022}^{e)}

※ 자산취득비는 2022년 운영 첫 해만 별도 추계하며 이후는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d) 시·도별 아동 수를 고려한 인력 규모

e) 1인당 자산취득비_{t=2022}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에서 산정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

4,196,924원(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2. 시·도아동권리보장원(안 제10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5개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임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기설치된 서울시와 부산시 외 15개 시·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기간 동안 지원단가는 현행 사업(서울시와 부산시)의 2021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에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운영비와 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고 아동 수를 나누어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 산출

○ 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2021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는 20억 7,300만원(36명), 운영비는 2억 2,500만원,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임

○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2021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는 14억 3,885만원(20명), 운영비는 1억 2,858만원, 사업비는 4억 6,056만원임

[표 3]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 2022~2026년

(단위: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2,290	2,354	2,422	2,495	2,573
운영비	227	230	233	236	240
사업비	610	617	625	634	643
합계	3,128	3,202	3,281	3,366	3,4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아동 1인당 평균 지원단가에 시·도별 아동 수를 곱하고, 이에 시·도별 아동 수에 비례한 인력 규모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더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표 4]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대구	설치·운영비	1,042	1,039	1,041	1,042	1,041
	자산취득비	51	—	—	—	—
인천	설치·운영비	1,320	1,328	1,338	1,347	1,354
	자산취득비	64	—	—	—	—
광주	설치·운영비	716	715	715	715	715
	자산취득비	34	—	—	—	—
대전	설치·운영비	673	669	670	670	671
	자산취득비	34	—	—	—	—
울산	설치·운영비	558	559	561	563	562
	자산취득비	25	—	—	—	—
세종	설치·운영비	272	289	305	320	334
	자산취득비	13	—	—	—	—
경기	설치·운영비	6,600	6,661	6,743	6,819	6,880
	자산취득비	318	—	—	—	—
강원	설치·운영비	613	612	614	617	618
	자산취득비	30	—	—	—	—
충북	설치·운영비	726	730	737	744	750
	자산취득비	34	—	—	—	—
충남	설치·운영비	1,036	1,048	1,063	1,078	1,090
	자산취득비	51	—	—	—	—
전북	설치·운영비	769	767	768	769	769
	자산취득비	38	—	—	—	—
전남	설치·운영비	751	750	752	753	752
	자산취득비	38	—	—	—	—
경북	설치·운영비	1,083	1,084	1,086	1,088	1,088
	자산취득비	51	—	—	—	—
경남	설치·운영비	1,578	1,581	1,587	1,591	1,587
	자산취득비	76	—	—	—	—
제주	설치·운영비	358	365	373	380	386
	자산취득비	17	—	—	—	—
합 계		18,968	18,198	18,354	18,497	18,597
— 국비		9,484	9,099	9,177	9,249	9,298
— 지방비		9,484	9,099	9,177	9,249	9,298

주: 국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89억 6,800만원, 2026년 185억 9,7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6억 1,400만원(연평균 185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안 제10조의3 신설)	18,968	18,198	18,354	18,497	18,597	92,614	18,523
－ 국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 지방비	9,484	9,099	9,177	9,249	9,298	46,307	9,261

주: 국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이윤경
연락처	02-6788-4742
	yoonklee@nabo.go.kr
